

양상한 2차 제시안, 금속산업최저임금은 또 ‘나중에’ 10일 7차 중앙교섭... 금속노조 “받아들일 수 없는 수준”



금속사용자협의회가 7차 중앙교섭에서 2차 제시안을 냈으나, 노조는 받아들일 수 없는 수준이라며 일축했다.

금속노조와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가 6월 10일 7차 중앙교섭을 노조 충남지부 케이피엠지회에서 열었다. 사용자들은 6차 중앙교섭에 이어 작업중지권 관련 추가 안을 냈다. 노조 요구안에 비해 작업중지권 행

사 범위와 조치 주체, 협력업체 지원 수준 등을 대폭 축소·제한한 것을 골자로 한다.

사용자협의회는 노조 요구안 ‘사업 또는 사업장 내 모든 노동자가 작업을 중지하거나 거부할 수 있다, 조합,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를 ‘회사 소속 노동자는 작업을 중지하거나 대피할 수 있다’로 수정하며 작업중지권 행사 대상을 대폭 축소한 안을 냈다.

작업중지권 행사 상황도 노조가 요구한 ‘재해가 발생했거나 유해·위험한 노동환경 등으로 본인 또는 주변 사람이 재해를 당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할 때’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로 제한했다.

사용자협의회는 작업중지 이후 조치를 심의, 의결하는 주체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명시한 노조 원안을 수정하여 ‘노사는 즉시 조사 및 필요한 제반 조치를 해야 한다’는 양상한 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사용자 측은 “통제되지 않은 거부권 남발에 대한 우려가 있다”며 “손가락 살짝 굽힌 것도 재해인데 그걸 가지고 라인이 세웠을 때 누가 감당할 수 있겠나”고 제시안 배경을 설명했다.



김상민 금속노조 정책실장은 “작업 거부의 의미는 안전조치가 충분하지 않아 위험할 경우 작업을 시작하지 않는다는 것이다”라며 “원안을 반영해달라”라고 강조했다. 이어 “작업중지권 보장 대상을 회사 소속만으로 제한한 것,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로 한정하는 것도 문제다. 위험을 인지할 때도 대피할 수 있다”며 최근 대법 판례를 근거로 들었다.

법원은 지난 2016년 컨테넨탈 공장 인근에서 발생한 독성물질 유출 사고로 작업중지권을 행사한 조남덕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컨테넨탈지회장에 대한 사측의 중징계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정상만 금속노조 충남지부장은 “실제 일하는 현장 노동자들이 가장 애쓰는 부분은 자기 작업이다. 작업에 집중하다 보면 스스로 중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요구안 2항의 조합, 산업안전보건위원,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현장 위험에 다른 사람보다 전문으로 대응하도록 짠 것이다. 취지를 봐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사용자협의회는 기후위기 대응 관련 안을 추가로 내지 않았다. 관련 교섭 역시 지난 중앙교섭 수준에서 담보했다. 금속산업 최저임금은 예년처럼 법정 최저임금을 협상 추이를 지켜보고 ‘나중에’ 내겠다는 태도를 고수했다.

장창열 금속노조 위원장은 “아쉽다. 노동자들의 죽음의 행렬이 멈추지 않고 있다”며 “노동자가 안전한 일터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은 사용자의 의무”라고 질타했다. 장창열 위원장은 “시간이 많이 지났다. 다음 교섭은 진전된 안으로 타결하길 기대한다”며 교섭을 마무리했다.

박근형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장은 “최저임금은 새 정권이 들어서서 지켜보자는 입장이다. 작업중지권 관련해 통제되지 않는 누군가가 멋대로 라인을 세우는 것을 누가 감당할 수 있나. 이걸로 타결하지는 것은 아니지만, 사측 고민을 말씀드린다”고 말을 받았다.

금속노조와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는 8차 중앙교섭을 6월 17일 서울 중구 금속노조 4층 회의실에서 연다.

